

의안번호	2213918
의 퇴 인	정태호의원
회 답 일	2025.11.7.
추계번호	25D5867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의2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의 규제영 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함(제1항)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필요성 2.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적정성 3. 규제 폐지 또는 완화 외의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4.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기술규정이 국민 에게 미치는 영향 7.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키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8. 그 밖에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	의무규정
2	안 제18조의2 (사후규제영향평가)	위원회는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 및 실제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를 선정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 도록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위원회는 전문성 또는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에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제1항) 1.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 규제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규제 2.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규제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후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규제	재량규정
		제1항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 요구 또는 의뢰를 받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2항)	의무규정
4	안 제38조 (국제협력)	제38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제1항),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2. 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관한 정보 교류 3. 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관한 공동 연구·조사 4. 그 밖에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	--

Ⅱ.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의2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의 규제영 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	미대상 － 국민의 생명·안전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건수는 많지 않아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과 예산 범위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18조의2 (사후규제영향평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38조 (국제협력)	미대상 － 현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7033-301)의 내역사업인 “국제협력”에 248백만원(2025년 기준) 편성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안 제18조의2제1항¹⁾에서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 및 실제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 또는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요구 또는 의뢰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 연구기관은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²⁾
- 개정안에 따라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해서 인건비·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전문 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지원하였는바,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문기관이 수행한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의 적정성 검증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1] 전문 연구기관의 위원회 심사지원(비용·편익분석 적정성 검증) 실적: 2020~2025년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8.
한국개발연구원	316	212	248	252	313	122
한국행정연구원	264	277	255	233	212	146
합 계	580	489	503	485	525	268

주 1. 전문연구기관은 ① 규제영향분석 매뉴얼 제·개정, ②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의 적정성 검증, ③ 기타 위원회 심사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2. 상기의 실적은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의 적정성 검증 실적임

자료: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1) 제18조의2(사후규제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 및 실제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를 선정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전문성 또는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 연구기관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 규제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규제
 2.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규제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후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
- 2) 제18조의2(사후규제영향평가) ② 제1항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 요구 또는 의뢰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기존규제의 정책목적 달성 수준을 확인하고 규제개선 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30여개 법령과 고시를 대상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시범 실시하였고 【참고자료】, 이를 전문 연구기관이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였음
 - 대상규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등 30여개 법령(고시 포함)³⁾
 - 협업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개정안은 사후규제영향평가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고 사후규제영향평가 요청 건수가 증가하게 되면, 전문 연구기관의 자체 예산을 초과하는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사후규제영향평가 요청 건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다르고, 평가 대상 규제 또한 그 특성과 난이도가 달라서 평가단가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한국행정연구원이 분석한 비용기보증금제도(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등 사후규제영향평가 시범사업 대상안건 3건 모두 각각 다른 분석 방법론이 적용되었음⁴⁾
- 따라서 현시점에서 사후규제영향평가 요청건수와 평가단가를 예측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3) 규제의 중요성, 개선 가능성, 국민적 관심도,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별함

4) 한국개발연구원,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 (2023.5.), p366-368.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

[참고자료] 2023~2024년 사후규제영향평가 시범사업 주요 목록

연도	소관부처	법령명
2023	경찰청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2023	고용부	안전보건교육규정 (전체)
2023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2023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2023	관세청	수입환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전체)
2023	교육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2023	국토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2023	기재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2023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2023	문체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2023	국가유산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023	방통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2023	산림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행규칙(제4조)
2023	산업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1조)
2023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2023	중기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2023	해수부	선박직원법 (제2조)
2023	행안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2023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2023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2024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2024	관세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 8, 10조)
2024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2024	과기부	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전체)
2024	산업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1, 제24조)
2024	교육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
2024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2024	행안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2024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2024	행안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